

## ■ 농기계종합보험 운영제도 안내 위한 책임총괄 회의

일시 : 2020년 05월 26일(화) 14:00

장소 : 한국경제신문사 7층 회의실

대상자 : 각 손사법인 농기계총괄책임자

내용 : 농기계 운영제도 등 안내

농기계 수리 제휴업체 15개 선정하여 협약식 맺음

- 농협 간판 달고 운영한다.(지역 협동조합을 통해서 신청 받아서 선정함)  
현재 동판 간판 제작 중으로 다음주에 보낼 예정이다.
- 제조사 구분없이 모든 농기계 수리한다.(캐빈도 교환 할 수 있다.)
- 수리비 과다청구, 확대수리 하는 곳이 많아 견제해야 한다는 생각에 선정 하였다.
- 수리업체의 횡포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다.
- 단순하게 지정만 해서 끝나는게 아니라 입고지원 등 모니터링 하겠다.(손사법인 지원건수 체크함)
- 손사법인이 잘 운영해서 키워야 한다.
- 지역 농협조합 담당자들 한테는 별도로 홍보 안 한다.
- 시범운영해서 효과가 좋으면 수도권에도 확대 하겠다.

★ 미입고, 부품조달 지연 견 등은 되도록 제휴업체로 지원해 달라

(계약자, 입고되어 있는 수리업체가 반드시 동의 하에 해야 한다. 강제지정은 하지 말라)

미입고 농기계는 대부분 수리비가 소액이기 때문에 출장수리도 가능하다.(미결 해소)

★ 고객들에게 강제로 입고 유도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(조심해야 한다.)

- 지정된 제휴업체 15군데 하고는 절대로 분쟁 일으켜서는 안된다.(문제가 발생하면 신뢰가 깨진다.)
- 문제 발생시에는 대화로 풀어달라(싸우지 말아달라) 단, 사고조사와 관련해서는 별개다.
- 수리업체가 면·부책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. 사고조사 면·부책(기계적손해여부) 판단은 손사법인이 결정해야 한다.
- 수리비 분쟁시 명분있게 해야 한다(제휴업체와 수리비 관련 분쟁시 황상천차장에게 연락해 달라)
- 제휴업체 수리비 지급은 지연되면 안된다.(청구한지 1주일이 지났는데도 손해사정서 작성 미완성)
- 수리 끝났으면 1주일이내 보고서 제출해야 한다.

★ 제휴업체하고 친해져서 금품수수(도덕적 해이) 등 있어서는 안된다.(입고지원 미끼로)

- 상호신뢰 유지해서 발전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.
- 제휴업체가 수리비 과다청구 했을때는 황상천차장에게 연락해 달라.
- 입고지원전 사전 제휴업체 사장님과 통화하여 수리가능여부 확인해 달라.
- 15개 제휴업체는 서류 제출 요구시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 이다.
- 부품단가표는 소액부품은 제외하고 고액부품 위주로 요구해라(소액부품 첨부 불필요)
- 견인비용은 계약에 따라 지급해 주면 된다.
- 수리완료후 6개월간 A/S 해준다.
- 고액부품 공급시 가지급 가능하니 이용해라.(제후업체 요구시)
- 미입고 장기미결건 들을 쪼인해서 수리하면 좋겠다.

★ 절대로 강제사항은 아니다. 잘되면 농기계보험에 더 확대 될 수있다. 당분간 제휴업체 입고건이라고 손해사정보고서에 명시해 달라.

## ■ 전반적인 농기계사고건 관련

- 내년부터는 농기계 등록제가 된다.(보험 미가입 농기계가 줄어든다.) 보험가입이 늘어난다.
- 손사법인 실무자 속아 내고 있다.(열정적이지 않은 직원한테는 배당 못준다. 자체 모니터링 한다.)
- 농기계 차량손해 담당자가 감가상각, 기계적손해 면·부책여부 내용도 모르고 손해액 결정, 사고조사 한다.
- 손사법인 농기계 담당자들은 농기계에 대해서 공부하고 노력해서 농기계 전문가 수준이 되어야 한다.  
(신입사원, 수준 떨어지는 직원에게 배당 주어서는 안된다.)
- 계약자가 영농조합법인 건 중 전손사고건은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.(모랄의심, 과다청구)
- 매뉴얼교육 지역별로 했는데도 신입사원, 무경험직원에게 배당 주고 있다.
- 퇴사자 인수인계건 손해액, 사고조사 내용이 부실하다.
- 농기계사고 전문성이 없는 직원에게 배당주고 있다.(특히 고액사고건)
- 육안으로보아 농기계 연식이 오래된 건인데 농기계 초과보험 가입하고 청구하는 경우가 많다.  
(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.)
- 부품 앗세이 교환을 부분교환으로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한다.  
(제휴업체 사장님들 얘기는 전체교환 안하고 수리 할 수 있다고 한다.)
- 올라오는 손해사정보고서 수준이 떨어진다.(사고조사, 손해액 관련)
- 손해사정보고서는 자기얼굴이다(현장조사, 감가상각, 손해액 결정은 명확해야 한다.)
- 고액부품 교체시에는 교체사유를 명확하게 보고서에 명시해야 한다.(아무런 내용없이 교환 안된다.)
- 손해사정 한 것도 없이 청구 들어온 데로 무조건 지급하고 있다.
- 매뉴얼에 맞게 지급해야 한다.(감가상각, 자기부담금)
- 결재시 전손, 고액건은 더 철저하게 검토해야 한다.
- 리앤씨 전손사고건 잔존물 처리건 실제로는 오래된 농기계인데 초과보험가입하고 전손처리한건 적발  
(전손사고건 조사 특히 철저하게 해야한다)